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기덕 의원
나. 의안번호: 제2029호
다. 발의일자: 2024.8.12.
라. 회부일자: 2024.8.14.

2. 제 안 사 유

- 최근 혼인률 감소 및 독신가구 등 증가에 따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,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.
- 특히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조례 규정 외에도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도 지원 조항을 확대하고,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추진계획 수립 시 민간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, 우수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, 시장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

규정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).

- 나. 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 연구 조사 사업 신설 및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있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한하도록 규정하고,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5항).
- 다.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및 기업의 지정 등에 대해 별도 조항을 분리하고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, 자의적 집행 방지하고자 별도 조항 신설(안 제9조).
- 나. 불완전한 자구 등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중복 방지하고자 삭제, 기타 조문 제목 수정 등(안 제4조, 제6조, 제7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」 등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1회용품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
<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 항	내 용
안 제4조	· 추진계획에 민간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포함 등
안 제7조2	· 민간위탁 규정 신설(다회용품 활용시설)
안 제9조	·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·기업 지정 관련 규정 정비 등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간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과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.

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·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에서 이를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.

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, 관련 연구·조사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역시 필요한 사항이므로, 안 제4조와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해 이견 없음.

- 안 제6조의 제목 변경은 ‘1회용품 사용 제한 등’을 ‘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’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나, 제2조(정의) 제3호에 따르면 ‘공공기관’이란 시 본청부터 출자·출연기관까지 시 관련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용어이므로, 조 제목을 ‘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’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또한, 안 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시책 사업 추진과 민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권고한 것이므로, 이의 제목 역시 ‘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’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
- 안 제9조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·기업의 지정 등에 관해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,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,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 중 ‘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’은 조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.

- 안 제7조제5항은 시장의 1회용품 시책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 취지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현재 서울시의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 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,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, 민간 위탁은 사업의 확대 여부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<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 의견
<p>제6조(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~⑥ (생 략)</p>	<p>제6조(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~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7조(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~3. (생 략) <신 설></p>	<p>1.~3. (현행과 같음) 4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·조사 사업</p>	<p>1.~4. (개정안과 같음) <개정안과 같음></p>
<p>4.5. (생 략) ② 시장은 민간기관·단체, 법제 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</p>	<p>5.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 ② ----- ----- --. <u>다만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</u></p>	<p>5.6.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, <u>다만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.</u></p>
<p>③·④ (생 략) <신 설>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p>제9조(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) ① (생 략) ② ----- 1. (생 략) 2. <u>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</u></p>	<p>제9조(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1.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</p>